

[별표 1]

체인사업종류별 지정기준(제7조제1호관련)

체인사업종류	지 정 기 준	
	자본금 또는 출자금	체 인 점 포
직영점형	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	○점포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인 직영점포 5개 이상 보유
프랜차이즈형	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	○점포면적 50평방미터 이상인 가맹점포 14개 이상 보유 ○점포면적 50평방미터 이상인 시범소매점포 1개 이상 보유
임의가맹점형	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	○점포면적 50평방미터 이상인 가맹점포 20개 이상 보유
조합형	출자금 1억원 이상	○가맹점포의 매장면적 합계가 1천평방미터 이상